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3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가. 창고용지의 매입 등

(1) 원고는 1993. 12. 31.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보관 및 하역업, 창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물류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2. 25. [redacted]로부터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3 창고용지 30,200.5㎡(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8. 11.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창고시설 및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2동(이하 '제1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5. 4. 21. 다시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동(이하 '제2 창고'라 한다)을 추가로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14. 5. 28. [redacted]터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3 창고용지 23,418㎡(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매수하여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5. 5. 2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창고시설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창고시설 2동(이하 '제3 창고'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취득세 등의 감면 및 화물보관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제1, 2 토지의 매입 및 제1 내지 3 창고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1, 2 토지 및 제1 창고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제2, 3 창고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감경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터 감면통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8. 12. 물류창고업 등록을 마친 후 주식회사 [redacted](전자상거래 사이트 [redacted]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redacted]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4. 9. 25. 제1 토지 및 제1 창고에 관하여 화물보관 및 작업계약[1]을, 2014. 12. 19. 제2 토지 및 제3 창고에 관하여 화물보관 및 작업계약[2]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5. 7. 16. 위 각 계약에 더하여 별도로 보세화물보관계약(이하 각 계약의 순서대로 '제1 내지 3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취득세 등의 추징

(1[redacted]시는 2016. 1. 4.부터 2016. 2. 23.까지 실시한 2016년도 기획세무조사를 통하여 '제1, 2 계약 등 원고와 쿠팡 사이의 법률관계 실질이 임대차계약에 불과하므로 원고 소유의 제1, 2 토지 및 제1 내지 3 창고[3]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 3. 29. 원고에게 위 각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명목으로 합계 1,782,647,910원[4]을 추징할 것임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7. [redacted]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redacted]시장은 2016. 6. 23. 제1 창고 중 사무실 일부(약 240.55㎡)와 제2 창고는 원고가 직접 물류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일부 채택 결정을 하였다.

1) 계약기간: 2014. 11. 1.~2016. 10. 31., 계약이행보증금: 429,000,000원, 화물보관 및 작업료: 월 143,000,000원(부가세 별도)
2) 계약기간: 2015. 4. 1.~2017. 3. 31., 계약이행보증금: 430,000,000원, 화물보관 및 작업료: 월 143,500,000원(부가세 별도)
3) 제1 계약의 목적물에 제2 창고도 포함되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4) = 791,022,170원 + 615,932,220원 + 236,899,970원 + 22,714,660원 + 116,078,89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3)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소정의 추징규정을 적용하여 별지1 처분내역 기재 각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제1 내지 3 계약을 통하여 [redacted]에 단순히 제1, 2 토지 및 제1, 3 창고[5]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화물보관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구 물류정책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6] 소정의 '물류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위 각 계약을 단순 임대차계약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쿠팡에 물류장비에 해당하는 위 각 토지 및 창고를 임대한 이상 이 역시 그 자체로 위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물류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redacted]공사가 제1, 2 토지를 분양하면서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점, 임대창고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 제2 창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제3 계약에 대하여는 2015. 6. 22. 법률 제13374호로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개정으로 인하여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이므로, 이하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데, 여기서 '물류사업'이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과 같은 활동을 유상으로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을 의미한다(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별표 1).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0, 31, 33 내지 68, 72 내지 77, 79 내지 81호증, 을 제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토지 및 제1, 3 창고는 원고가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조), 보통 그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차권등기나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1, 2 계약(갑 제20, 21호증)의 경우 ① 원고가 [redacted]에 단순히 제1, 2 토지 및 제1, 3 창고의 사용·수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redacted]을 위하여 [redacted]의 물품을 보관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업무를 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고, ② [redacte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간 화물보관 및 작업료가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매월 정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제2조, 제4조), ③ 필요할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redacted]에 공적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제6조), ④ [redacted]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1, 3 창고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시설물의 구비·보완·개선의무와 [redacted]의 화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유지의무, 도난방지의무 등을 부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5조, 제8조, 제9조), ⑤ 원고가 화물보관 및 작업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429,000,000원(제1 계약), 430,000,000원(제2 계약)에 대하여 각각 제1 토지 및 제1 창고와 제2 토지 및 제3 창고에 위 각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제1, 2 계약에는 통상적인 임대차와는 구별되는 요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2)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참조). 그런데도 ① 원고는 제1, 2 계약 제9조 제4호에 따라 2014. 7.경 [redacted] 주식회사와 사이에 '창고건물, 재고자산, 사무동 건물, 사무동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와 [redacted]로 하는 화재보험계약(보험가액: 105억 원, 보험기간: 2014. 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14.~2015. 7. 14.)을, 2015. 7. 7. [redacted]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1 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보험가액: 100억 원, 보험기간: 2015. 7. 14.~2016. 7. 14.)을, 2016. 3. 31. [redacted]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3 창고에 보관하는 화물에 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보험가액: 100억 원, 보험기간: 2016. 4. 1.~2017. 3. 31.)을 각각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지게차운전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A, B, C, D을 통하여 제1, 2 토지 및 제1, 3 창고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점검 및 전기안전점검, 시설물 훼손에 따른 각종 보수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함과 아울러 주식회사 [redacted]에 시스템 경비용역을 의뢰하기도 한 점, ③ 원고 소속 직원인 성명불상의 팀장, B, A 등이 [redacted] 측 직원들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1, 3 창고 및 시설물에 파손이 발생할 경우 그 보수 방법과 입·출고되는 화물의 포장·관리 등에 관하여 수시로 업무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토지 및 제1, 3 창고에 관하여 원고와 쿠팡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단순한 임대차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와 [redacted] 사이에 체결된 제3 계약은 '원고는 보세창고로부터 [redacted] 제품의 반출, 수입된 [redacted] 제품에 대한 한글 라벨제작 및 부착, 원고의 창고에 쿠팡 제품 보관 및 출고 후 [redacted] 물류창고로의 입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redacted]은 원고에게 라벨부착 작업비용(1개당 제작 40원, 부착 60원, 환적 140원), 컨테이너 하역 비용(파렛트·벌크 화물 여부에 따라 130,000원~400,000원), 보관 비용(1일 1파렛트 기준 50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제1, 2 토지 및 제1, 3 창고를 이용하여 [redacted]의 보세화물에 대한 라벨링, 하역, 보관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바(갑 제61호증), 이러한 업무형태는 그 자체로서 앞서 본 구 물류정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류시설운영업이나 물류서비스업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4) 피고는 원고가 [redacted]으로부터 화물보관료 등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은 점, [redacted]이 제1, 3 창고의 일부에 대하여 주민세 8,092,250원을 납부한 점, 쿠팡의 내부 문서에 원고와의 법률관계가 '운용리스'로 지칭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redacted] 사이의 법률관계가 단순한 임대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보관 및 작업료는 원고와 쿠팡 사이에 정산이 예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1개월 동안 제1, 3 창고에 보관하는 화물 전체에 대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보관료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위 각 창고에 대하여 쿠팡이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과 제1 내지 3 계약의 법적 성격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계학상 금융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관계를 통틀어 운용리스라고 지칭하는바 쿠팡 역시 단지 이러한 의미에서 운용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류창고업의 운영형태는 창고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화물을 수시로 입·출고하여 보관하는 형태의 화주에게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화주가 직접 임차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임대창고' 방식과 창고업자가 단기간에 걸쳐 화물을 단순히 보관하기를 원하는 화주와 직접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이른바 '수탁창고'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7], 이러한 임대창고 방식과

7)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53987 판결, 대법원 2016. 7. 29.자 2016두37232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수탁창고 방식의 창고업 운영이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물류시설운영업'에는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등의 창고업이 포함되는바, 설령 원고가 임대창고 방식에 따라 제1, 2 토지 및 제1, 3 창고를 [redacted]에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구 물류정책기본법 등이 정한 물류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토지 및 창고를 물류시설운영업(창고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8]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창고업에서의 '보관' 개념을 특정함에 있어 구 물류정책기본법 대신 창고업과 관계되는 상법의 규정 및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임대창고 방식은 창고업의 기본요소인 '보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다양한 물류사업의 종류 및 내용(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과 같은 활동)을 열거·예시함으로써 상법상 창고업{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상법 제155조)}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바, 오히려 상법상 창고업 관련 규정만으로는 물류사업 전체를 설명

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단서가 추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계청장의 고시에 불과하여(통계법 제22조 제1항) 물류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별지1

처분내역

순번	과세대상	세목	세액(원)
1	제1 토지	취득세	611,476,440
		지방교육세	52,463,120
2	제1, 2 창고	취득세	231,352,110
		지방교육세	11,330,030
3	제2 토지	취득세	581,400,640
		지방교육세	49,394,560
4	제3 창고	취득세	112,542,100
		지방교육세	5,456,580
합계			1,655,415,58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물류정책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화물 운송업	육상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해상화물운송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항공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파이프라인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화물취급업(하역업 포함)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화물주선업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물류장비임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물류컨설팅업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 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해운부대사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 "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 시설
 나.「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라.「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사업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17

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나.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다.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 상법

제155조(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끝-